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건 명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관련

1. 진행경과

□ 개요

- 201X. XX. (주)○○○○(이하 갑)은 ○○시 ○○면 ○○리 XXX번지 공장부지의 진출입로 및 배수관매설의 목적으로 ○○시 ○○면 ○○리 XXX번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함
- 201X. XX. 인근 ○○시 ○○면 ○○리 XXX-X번지에 XXX(이하 을)이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득함
- 201X. XX. 단독주택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국유지 ○○시 ○○면 ○○리 XXX번지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득하고자 하였으나 신청부분이 갑이 기승인 받은 부분과 중복됨
을은 갑과 기승인 부분 사용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갑의 기승인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X. X. XX일자로 목적 외 사용허가를 득함
갑은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 현황도에는 표기가 되어있는 시설물(경계석)을 설치하여 을의 소유 주택으로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임
- 201X. XX. 시설물 원상복구(철거) 이행명령 실시(1차)
- 201X. XX. 갑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연장 허가 승인
- 201X. XX. 시설물의 원상복구(철거) 이행명령 실시(2차)
- 201X. XX. 갑의 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진입로 목적으로 허가받았을 경우 기존 수 허가자가 독점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공동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초 사용허가 및 사용연장허가 시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 경계석을 설치하여 인근 단독주택 소유자 을의 차량통행을 방해 하고 있고,
- 을의 공동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갑이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투자 등의 이유로 일정금액을 요구하며 경계석 철거에 불응
- 한 필지의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적으로 들어올 경우, 기존 허가자의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투자 등의 이유로 기존 허가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은 없음)

- 기존 허가자가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경계석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허가취소 및 동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불법시설물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가 가능한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이를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검토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을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입로 목적으로 “목적 외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철회금지 등의 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에 귀 시에서는 201X.XX.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연장 허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19조에 “본 사용승인으로 독점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사용승인 구간에 제3자가 공동사용하고자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사용승인 처분이 가능하고, 만약 제3자에 사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의거 사용승인 취소가 가능함” 을 규정 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2019. 6. 3)도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공동사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목적 외 사용허가시 목적 외 사용자가 진출입로를 불특정 다수가 일반적인 통행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타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동일구간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료 분담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 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가 난 농업생산기반시설(국유지)에 대해 공동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허가시에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3자 공동사용)이 부여된 경우’ 에는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투자 등의 이유로 한 기존 허가자의 동의서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 이 사안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이를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귀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불법시설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이미 귀 시에서 2차에 걸쳐 민원인이 설치한 시설물(경계석)에 대해 원상복구(철거) 이행명령을 실시하였는 바,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사전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